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384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2088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8. 3. 20.경부터 'D'(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종전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B은 2018. 7. 19.경 C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E회계법인으로부터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713,219,789원[= 자산총액 2,323,163,909원(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 918,117,260원 포함) - 부채총액 1,609,944,120원]으로 감정평가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12. 발행주식 총수 91,000주, 자본금 910,000,000원으로 설립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주식 중 71,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는 종전 사업장 자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B에게 인수되었고(다만, 순자산가액 713,219,789원 중 3,219,789원 부분의 주식인수는 포기), 20,000주(1주당 액면금 10,000원)는 인수가액 200,000,000원을 납입한 C에게 인수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19.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36,724,690원, 지방교육세 3,672,460원, 농어촌특별세 1,836,230원 합계 42,233,380원을 신고하고, 2018. 9. 27.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제1항),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출자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닌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19.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을 종합하면,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 법인의 총 자본금만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위 순자산가액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신설 법인인 원고의 자본금은 910,000,000원으로 현물출자된 종전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 713,219,789원 이상이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와 달리 해석하여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등 참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양도는 위 법령에 의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제4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위 면제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0160 판결 참조).

2)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인 '신설 법인 자본금'의 의미

앞서 살펴 본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정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주자가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다른 거주자가 현금출자 등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자본금 등까지 모두 포함한 신설 법인의 총 자본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 기업체를 법인 기업체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작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주자가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그 현물출자액보다 작을 경우, 현금출자 등으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인수하는 다른 거주자의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 않게 되므로, 당연히 그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 순자산가액의 대비대상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다른 출자의 대가로서 인수되는 주식까지 포함된 총 자본금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주자가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자본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취득세 면제를 받는 현물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함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할 뿐,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그 출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령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주자가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현물출자액보다 작을 경우까지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극단적으로 위 현물출자 거주자가 그 현물출자분에 대한 주식인수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대가 없는 출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까지 위 법령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③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적용요건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으로 정하여, 명시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을 대비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인 대비대상 금액으로, 위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거주자인 B이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서 취득한 신설 법인 원고의 자본금은 710,000,000원으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713,219,789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8. 9. 27.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20. 6. 24.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취득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B의 현물출자액 713,219,789원 중 주식취득 가액 7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9,789원은 원고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본금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현물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함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할 뿐,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그 출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령에 의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별지1

부동산 목록

1. [redacted]군 F 대 874㎡

2. [redacted]군 F 지상

 1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533.47㎡

3. [redacted]군 F건물. G호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사 건평 1.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